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 재개를 위한 「5·18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2조제3항 및 안 제6조제3항)

- 보상지원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미설정 되어 있던 것을 “2년, 1회 연임”으로 규정

나. 명예회복 신청 절차 신설(안 제15조의2)

-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을 위해 명예회복 신청 기간, 제출서류 및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

다. 기타지원금의 지급 신청기간 연장

- 법 개정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타지원금 지급신청 기간('23.7.1.~'23.12.31.) 설정

라. 외모 흉터 관련 남녀간 신체 장애등급 차별 해소

- 동일한 신체장애(외모 흉터 관련)에 대해 남녀간 등급이 상이하여 남녀 같은 등급으로 통일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에 있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명예회복 신청) ①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예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제출한다) 1부
2.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에 따른 명예회복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2제1항”을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자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3) 신체장해등급 7급 제12호 및 12급 제13호의 개정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첨부서류		
첨부서류	1. 관련자의 해직사실, 재직기간 및 해직일자(기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2. 복직, 특별채용, 유사 직업에 취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관련자가 가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관련자가 위임자에게 위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관련자의 유족이 신청할 경우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제적등본 6. 그 밖의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①란에는 관련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 ②란에는 관련자의 복직 여부와 복직(특별채용 포함)이 된 경우 그 일자를 적습니다.
- ③란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관련자의 입사 일자, 해직 일자 및 해직 당시의 직장명뿐만 아니라 그 후 신청일 현재까지의 직업 사항을 전부 적습니다.
- ④란에는 관련자 본인 및 가구원(부양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적습니다.
※ 소득이 없더라도 적고, 관련자의 유족이 신청할 경우 유족 대표자의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적습니다.
- ⑤란에는 신청인이 관련자 본인인 경우에는 관련자의 인적사항,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란에 적지 않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라)에 적습니다.

명예회복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0일
관련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신청 내용	① 명예회복 유형 []복직 []학사징계취소 []그 밖의 유형()		
	②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용		
사건 경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다)에 작성		
③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 의	연락처	

본인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명예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기타지원금 신청서(해직자용) 1부(기타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관련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에는 신청하려는 명예회복의 유형 중 해당항목 []에 “√” 표시를 합니다.
- ②란에는 관련자가 참여한 5·18민주화운동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③란에 적지 않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라)에 적습니다.

명예회복결정서																																				
접수번호		제 호																																		
관 련 자	성명 (한자)	()	주민등록 번호	-																																
	당시 주소																																			
신 청 인 (2인 이상은 별지 제1호서식 (라) 사용)	성명 (한자)	()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관련자와의 관계	의	연락처	() -																																
주 문																																				
결정 이유는 뒷면에 기재																																				
년 월 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table style="width: 100%; margin-top: 20px;"> <tr> <td style="width: 25%; text-align: right; padding: 5px;">위원장</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left; padding: 5px;">(서명 또는 인)</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right; padding: 5px;">위원</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left; padding: 5px;">(서명 또는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위원</td>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서명 또는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위원</td>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서명 또는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위원</td>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서명 또는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위원</td>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서명 또는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위원</td>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서명 또는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위원</td>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서명 또는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위원</td>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서명 또는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위원</td>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서명 또는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위원</td>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서명 또는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위원</td>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서명 또는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위원</td>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서명 또는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위원</td>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서명 또는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위원</td>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서명 또는 인)</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위원</td>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서명 또는 인)</td> </tr> </table>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결 정 이 유

[관련여부]

[결정이유]

명예회복결정통지서

접수번호 : 제 호

성 명 :

주 소 :

귀하의 명예회복 신청에 대하여 별첨 명예회복결정서와 같이 명예회복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2부

년 월 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인)

명예회복결정통지서(기각용)

접수번호 : 제 호

성 명 :

주 소 :

1. 귀하의 명예회복 신청에 대하여 별첨 명예회복결정서正本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예회복결정서 正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명예회복결정서 正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 1. 명예회복결정서 正본 2부
2. 재심신청서 서식 1부

년 월 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u> <u>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u> <u>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u>제15조의2(명예회복 신청) ①명예</u> <u>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려</u> <u>는 사람은 2023년 7월 1일부터</u> <u>2023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u> <u>5호서식의 명예회복신청서(전</u> <u>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u> <u>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u> <u>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u> <u>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u> <u>한다.</u> <u>1.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u> <u>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u> <u>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u> <u>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u> <u>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u> <u>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u> <u>제출한다) 1부</u>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①<u>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u>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① (생략) ②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u>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u>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u>2.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u> ②제1항에 따른 명예회복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①<u>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u>----- ----- <u>자</u>는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u>-----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259